

“번영로 하늘채 라크뷰”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각 기관별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선정 사업주체에 통지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을 통하여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미 신청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은행 창구에서는 청약이 불가 합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 접수 중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부적격자는 해당 기관의 추천 여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접수 및 동·호수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간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을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주체는 각 기관에서 최종 통지된 대상자와 주택형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신청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대상자가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 내역과 상이한 청약신청을 할 경우 당첨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확인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사업 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 기간, 공급대상 주택 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 등은 모집공고일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기 특별공급 일정 계획(예정) 등 안내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 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개요 및 공급일정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363-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2층 ~ 지상 최고 30층 8개동, 공동주택 80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분양 803세대 중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대상 73세대
- **공급대상**

(단위 : m²/세대)

주택 구분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공용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공급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59.9851A	59A	59.9851	19.6638	79.6489	37.4784	117.1273	39
	84.9938A	84A	84.9938	26.7574	111.7512	53.1038	164.8550	359
		84A1						
		84A2-1						
		84A2-2						
	84.9978B	84B	84.9978	26.9176	111.9154	53.1063	165.0217	101
	84.9563C	84C	84.9563	27.8790	112.8353	53.0804	165.9157	77
	84.9732D	84D	84.9732	27.6983	112.6715	53.0910	165.7625	64
	84.9931E	84E	84.9931	26.7351	111.7282	53.1033	164.8315	76
		84E1						
	84.9896F	84F	84.9896	28.7089	113.6985	53.1012	166.7997	23
	96.9978A	96A	96.9978	30.2969	127.2947	60.6039	187.8986	2
	96.9987B	96B	96.9987	30.2750	127.2737	60.6044	187.8781	2
	110.9656A	110A	110.9656	35.6596	146.6252	69.3309	215.9561	58
127.9515A	127A	127.9515	43.3789	171.3304	79.9893	251.3197	2	
합 계								803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 등에는 약식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84.9938A타입의 약식표기(84A, 84A1, 84A2-1, 84A2-2, 84A3)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된 것으로 84.9938A로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당첨시 약식표기의 타입 및 동·호수는 임의배정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사전에 단지 및 동호 배치도, 단위세대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84.9931E타입의 약식표기(84E, 84E1)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된 것으로 84.9931E로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당첨시 약식표기의 타입 및 동·호수는 임의배정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사전에 단지 및 동호 배치도, 단위세대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登記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일반)특별공급 배정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73세대
(단위 : 세대)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85㎡이하 세대수의 10%)															
	국가 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합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배정	예비	배정	예비
059.9851A	1	5	-	-	-	-	1	5	-	-	-	-	1	5	3	15
084.9938A	6	30	6	30	6	30	6	30	2	10	2	10	8	40	36	180
084.9978B	2	10	2	10	2	10	2	10	-	-	1	5	2	10	11	55
084.9563C	1	5	1	5	1	5	1	5	1	5	1	5	1	5	7	35
084.9732D	-	-	1	5	1	5	1	5	1	5	1	5	2	10	7	35
084.9931E	1	5	1	5	1	5	1	5	1	5	1	5	1	5	7	35
084.9896F	-	-	-	-	-	-	1	5	1	5	-	-	-	-	2	10
합계	11	55	11	55	11	55	13	65	6	30	6	30	15	75	73	365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5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며, 대상자 추천 시 청약 주택형을 반드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자 추천세대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일정 계획(예정)

구분	일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08.16(금) 예정	· 일간신문 / 청약홈 / 변영로하늘채라크뷰 홈페이지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 홈페이지 : www.hanulche-lacview.com
건본주택 개관일	2024.08.23(금) 예정	· 건본주택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71-6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 청약	2024.08.26.(월) 예정 09:00 ~ 17:30
	건본주택 방문청약	2024.08.26.(월) 예정 10:00 ~ 14:00
당첨자 및 동·호수발표	2024.09.03.(화) 예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계약 기간	2024.09.23.(월) ~ 09.26.(수) 3일간 (예정)	· 건본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71-6)

- ※ 상기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방법은 인터넷청약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청약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단, 건본주택 청약접수 시에는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특별공급 신청서류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조)

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공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 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공급 기준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주택		부부가 중복당첨 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 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등.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 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무주택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p> <p>- 기관추천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청약 통장 자격 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울산광역시</th> <th>부산광역시</th> <th>경상남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50만원</td> <td>30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400만원</td> <td>6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700만원</td> <td>1,0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000만원</td> <td>1,5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 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구 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대상자 (신청자격)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분</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p>																						
추천 기관	구 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등 (청약통장 불필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국가 유공자 또는 그 유족	울산 보훈지청 보상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애인 (청약통장 불필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울산광역시청 장애인 복지와 부산광역시청 장애인 복지와 경상남도청 장애인 복지와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당첨자 선정 방법	<p>■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p> <p>■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p> <p>■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p>																						

예비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

III 현장 · 건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현장 위치_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363-1번지 일원



변영로 하늘채 라크뷰 건본주택



- 위치안내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71-6
- 건본주택 개관일 : 2024.08.23.(금) 예정
※ 상기 건본주택 개관일 및 운영시간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hanulche-lacview.com/>
- 분양문의 : 1555-5803

건본주택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271-6

※ 상기 지역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개발계획 및 교통계획에 대한 사항은 개발주체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무관합니다.